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10. 27.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10.14.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6.10.17.
- 다. 상정일자 : 제20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16.10.2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가. 제안이유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의 사유에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신설하여 범죄피해자 증가로 인해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지원을 받지 못해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성격인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를 구체적으로 명시(제3조 제12호)
- 2)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안 제3조에 규정된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신설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해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을 지원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판결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 타 : 없 음